〔별지 3〕

저소득주민 장학계정 자금 신청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 장학계정 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자금을 받았거나, 학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성북구에서 지정한 기관(단체)등에서 일정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할 지원조건 위반 시에는 시행규칙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거 기금 환수는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인)

수혜자 (인)

성북구청장 귀하